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

개정(2022.12.01)

개정(2023.12.01)

개정(2024.05.01)

개정(2025.09.01)

제1조 적용범위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는 이 특약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관련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을 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 사업자이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3년으로 한다.

② 디폴트옵션형^{주)}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주) 퇴직연금(DC/IRP)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제6조 재예치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1. 신규일 또는 만기일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재예치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등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하며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
2.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됩니다.
3.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하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 이율 및 이자계산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일 현재 고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이 예금의 신규일 및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한다. 다만, 이율결정일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제8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제9조 거래방식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시스템에 의해 신규, 지급, 해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단말거래나 인터넷거래는 불가능하다.**

제10조 중도해지

①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재예치일)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은행계정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하나의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단, '9', '10', '11'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9.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0.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 4 및 제13조의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1> 6개월 미만 : 3개월제 이율

<주2>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제 이율

<주3> 1년이상 2년 미만 : 1년제 이율

<주4> 2년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이율

<주5> 디폴트옵션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시 : 3년제 약정이율

제11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이내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② 이 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해지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한다.

④ 수수료 납부를 하기 위하여 분할해지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예금자보호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제13조 기타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등은 부가하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②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20.11.25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2.12.01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3.12.01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4.05.01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5.09.01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